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96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곽규택 · 조승환 · 박지원
김용태 · 유상범 · 신성범
김상훈 · 강대식 · 강승규
배준영 · 조지연 · 강명구
서천호 · 최은석 · 서범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주거 · 교통 · 교육 · 의료 시설 등 생활환경 기반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나,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의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여 인

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제5호 신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완료되거나 실시 중인 사업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투자심사) ① · ② (생략)	제37조(투자심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 <u>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u>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u>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